



노인 인권보호 지침

노인학대 예방교육



시설장: 전유정



목차

1. 노인학대의 정의

- 노인학대의 정의 및 원인 / 노인인권 보호권리

2. 노인학대의 유형

- 노인학대의 유형 / 고령화 사회가 미치는 영향

3. 노인학대 대처법

- 노인학대 예방법 / 노인학대 신고의무 및 보장

노인학대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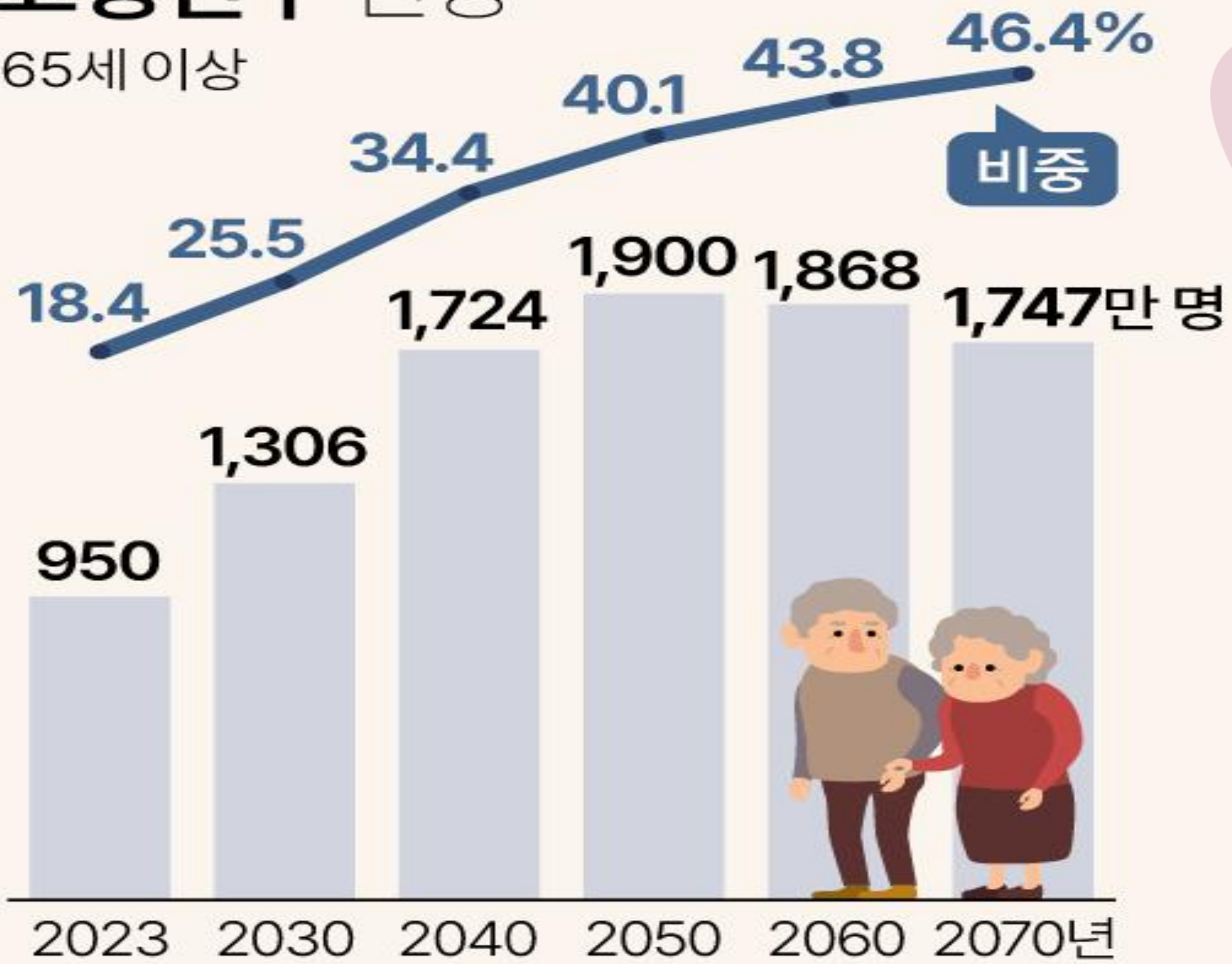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노인복지법 제1조 제3호)

노인학대인권보호의 목적

노인 인권보호 권리

고령인구 전망

65세 이상



고령화 사회가
미치는 영향

저출산

위생개선

영양향상

의료발전

인구 고령화

경 제

복 지

문 화

정 치

성장
하락

부양
부담

노인
경시

세대
갈등

노인학대의 유형 및 징후

1. 신체적 학대

4. 재정적 학대(착취)

2. 언어, 정서적 학대

5. 방임 학대

3. 성적 학대

6. 자기 방임

1.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때리기 / 세게 치다

꼬집는다 / 찌르다

무리하게 먹이기

신체를 구속하기 / 감금하기

불필요한 약물투여

담배 등으로 화상 입히기

징후

- 설명할 수 없는 상처, 치료받지 못한 상처가 있다
(잘린상처, 찢린상처, 생채기, 출혈, 골절 등)
- 탈수상태에 있다 / 이상한 체중감소

2. 언어 /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말로 욕을 퍼붓는다

“쓸모없는 늙은이”

노인만 따로 식사를 먹게 한다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외출시키지 않는다

무시하고 대답하지 않는다

-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다 / 질문에 ‘네’, ‘아니오’ 짧게
응답

- 표정이 없다 / 가족을 피한다 / 집에 돌아가려하지
않는다

- 정서 상태 불안정

징후

3.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및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성적수치심 유발 언어

성적수치심 유발 행위

폭행 후 강제적 성행위 / 강간 원치 않는 성행위 및 강간

남녀 구별 필요 공간에 구별 없는 경우-탈의실, 화장실 개방

징후

- 속옷이 찢어짐 / 성병 / 분노 또는 수치심
- 외부성기부분이나 항문부위의 타박상이나 하혈,
우울

4. 재정적 학대(착취)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노인의 유언장 허위작성 노인 허락 없이 부동산 매매

노인 허락 없이 노인 명의증서 변경 및 증여

노인의 소득(연금, 임대료)을 가로챈다.

징후

-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없다
- 자신의 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 노인의 재산이 갑자기 타인명의로 전환되어 있다

5. 방 임 학 대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다. 노인 방만 청소하지 않는다.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다.

와상 시 몸의 위치 변경을 태만히 한다.

징후

- 오물, 대소변 냄새, 악취가 난다. / 욕창이 있다.
- 노인 주변환경에 있어 건강이나 안전에 위험한 증후
- 머리, 수염, 손톱 등이 자라서 지저분해져 있다
- 언제나 같은 의복이나 더럽고 찢어진 옷을 입는다
- 계절에 맞지 않는 의복을 입고 있다

6.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음

의도적으로 식사 거부

자해 및 자살기도

의도적으로 신변 청결 및 기본 생활 회피

치료행위 거부로 생명에 위험 초래

징후

- 스스로 식사와 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 필요한 치료와 약복용을 중지 또는 이로 인한 건강상태 악화
- 의도적으로 죽고자 하는 모든 행위

노인학대 사례에 대한 대응

노인학대 피해자는 지역사회에서
접촉이 제한되어 고립되었거나
학대상황에서 은폐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노인학대 가해자는 학대사실을 숨기거나
부정하거나
노인성질환으로 넘기려 한다.

노인학대는 가족체계에서 발생되므로
개입의 단계에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문제도 함께 다루어야 한다.

노인학대의 초기개입으로 미약한 상황에서
더 열악한 상황으로 발전을 막을 수 있다는
예방차원에서 초기개입은 중요하다.

위험상황에
노인에 대한
접근법

- 열린 자세
- 비난 금물
- 원인규명보다는 문제 해결에 집중
- 어르신이 주도적으로 상황 해결을 해나가도록 지지해 드리는 것 중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노인복지 법 제 39조의 6 제2항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소방서의 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신고의무 위반 처벌규정강화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20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내리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함.

- 노인복지법 개정안 통과 (09년 03월)-

신고 의무자의 자세

1. **위기상황** 및 **의심상황**을 알게 될 시에는 기관에 알려라
2.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을 활용하라!
3. 피해노인의 언행, 학대상황에 대해 판정하지 마라
4. 지역자원 등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림.

신고자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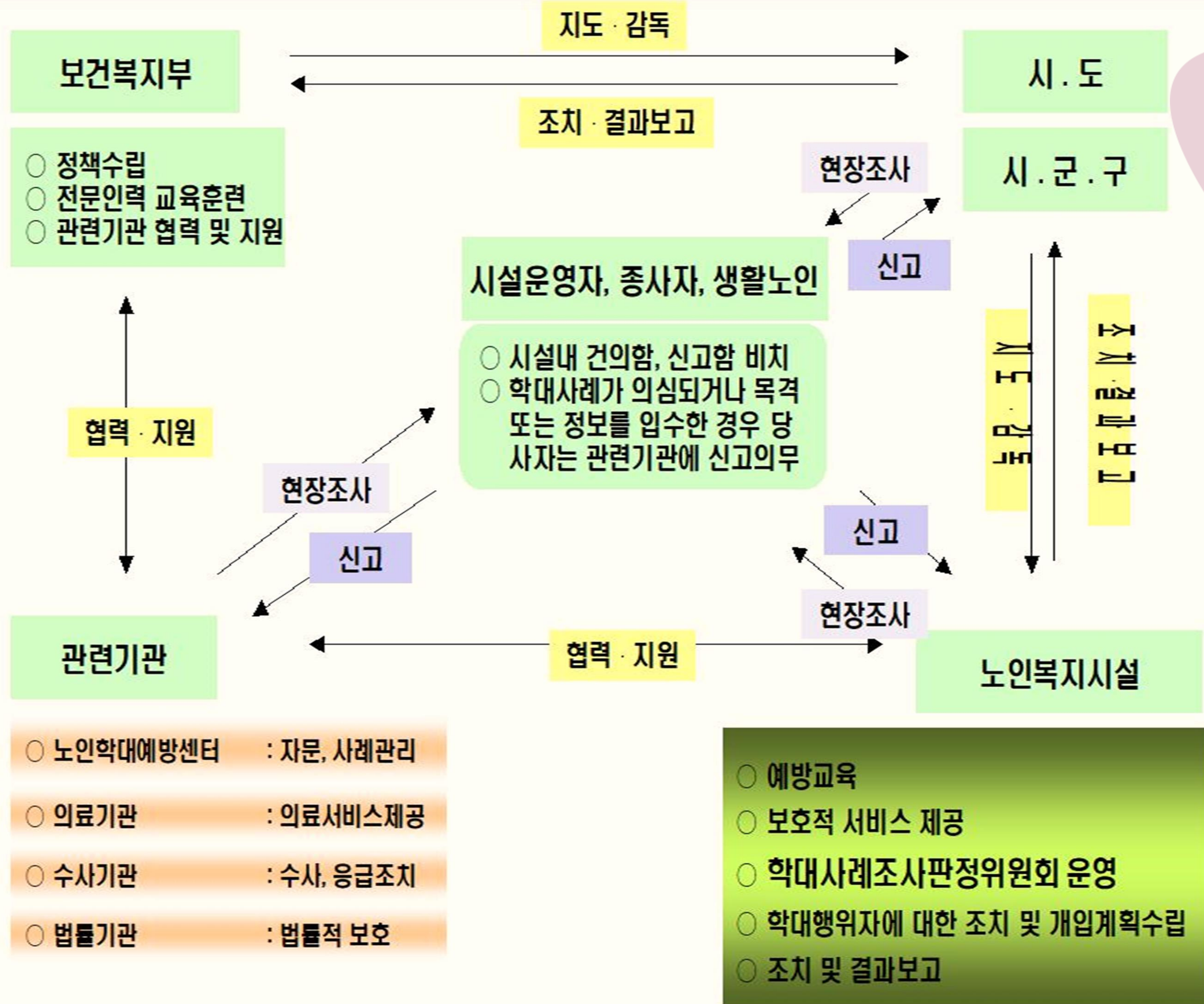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1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노인인권학대 처리 절차



노인학대 신고기관

☎ 1577-1389



당신도 언젠가는...

세월을 업고 살아갑니다

노인학대 신고·상담
1577-1389
당신의 작은 관심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인천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전라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서울특별시노인보호전문기관	광주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강원도노인보호전문기관	전라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부산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대전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경상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부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울산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충북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대구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가족부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노인보호전문기관
Korea Elder Protection Agency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직업윤리와 자세





목차

1. 요양보호사의 업무

- 요양보호사의 직무 및 기능/ 요양보호업무 기본원칙

2. 요양보호사의 윤리와 태도

- 요양보호사의 윤리 강령/요양보호사의 직업적 태도

3. 요양보호사의 역할

- 요양보호서비스의 이해/요양보호사의 자기 및 안전관리



요양보호사 란?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 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제공시설)
등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및 정서 사회적 보살핌을 제공하는 사람

요양보호 서비스의 기능 및 업무

요양보호 서비스의 기능

65세 이상 노인,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의

신체기능을 증진 시키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요양보호서비스의 분류

- 신체활동지원 서비스

- 가사활동지원

- 개입화도지원 서비스

- 전서지원 서비스



업무 제공시 준수하여야 할 기본 원칙

요양보호사의
업무의 기본원칙

1. 급여대상자 개인의 삶을 존중하며 본인 및 가족들로부터 습득한 급여대상자의 성격, 습관 및 선호하는 서비스 등을 개시 전에 반드시 확인함.
2. 급여대상자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급여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며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서비스 제공 전 서비스 내용에 대해 급여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서비스제공을 동의한 경우 제공.
다만, 급여대상자가 치매 등 인지능력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업무 제공시 준수하여야 할 기본 원칙

요양보호사의
업무의 기본원칙

4. 급여대상자의 현재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 급여대상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강요하지 말 것.

5. 급여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제공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급여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보장한다.

6. 급여대상자의 상태변화 등으로 계획된 서비스 외에 추가적인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변경, 의료적 진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기관에**
신속하게 연락을 취한다.

업무 제공시 준수하여야 할 기본 원칙

요양보호사의
업무의 기본원칙

7. 급여대상자에게 의사소통 불능, 협조 곤란 등의 이유로 신체적 학대, 언어적 폭행, 등 정서적 학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서비스 제공 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기관에 보고한다.
(※ 부축 동행하다가 넘어져 부상을 입거나, 목욕물의 온도조절 실패로 화상을 입는 등)
9. 서비스제공 도중 급여대상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응급처치의 우선순위에 맞게 제공하고 응급처치를 할 수 없거나 의사에게 보고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급여대상자를 옮긴다.

직업윤리강 령?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행동규범을 말한다.
요양보호사는 자신이 속한 직업의 윤리를 인식하고 실천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상자와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할 것이다.

윤리 강령

요양보호사의
윤리강령

1. 요양보호사는 인종, 연령, 성별, 성격, 종교,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신체 정신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등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2. 인도주의정신 및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대상자의 자기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지시에 따라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기관에 보고**한다.

4. 효율적이고 안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5. 요양보호사는 업무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건강관리, 복장 및 외모관리 등을 포함하는 자기관리를 철저히 한다.

6. 업무 수행 시 항상 친절한 태도와 예의 바른 언행을 실천한다.

7.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유지한다.

8. 업무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가족, 의사, 간호사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적 태도

요양보호사의
직업적 태도

1. 신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한다.**
2. 직업에 **종사하게 된 처음 동기를 점검하며 겸손한 태도를 갖는다.**
3. 대상자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다.-
성실하고 침착한 태도와 책임감.
4. 요양보호업무와 **관련된 모든 직업인들과는 상호 협조하는 태도 및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적 태도

요양보호사의
직업적 태도

5. 원활한 요양보호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프로그램에 적극적 참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직업적 성장을 위해 자신을 개발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6. 대상자로 부터 호감의 대상이 되고 상호신뢰감 형성, 친절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갖춘다.

바른 몸가짐, 바른 동작, 바른 언어생활을 노력하고 실천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 약속한 내용, 방문시간 등 반드시 지키며 무슨 사정으로 늦거나 방문 일을 변경 할 경우

반드시 기관과 대상자에게 연락하여 양해를 구한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적 태도

요양보호사의
직업적 태도

7. 요양보호사는 법적·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범하지 않는다.

- 대상자, 가족, 타 직원에 대한 언어적, 신체적 폭력
- 할당된 업무를 수행 하는데 있어서의 비효율성, 무능력, 반복되는 태만
- 기관에게 알리지 않고 근무지를 비우는 행위
- 대상자 소유, 공용전화로 사적인 전화를 하는 행위

8.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분실, 파손, 부상)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고발생 시에는 즉시 기관에게 보고한다.

요양보호 서비스의 이해

서비스 제공 시

유의점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경우는 신체상 또는 정신상 심한 장애가 있어 상시 **요양보호서비스가 요구되는 노인**으로 가정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다.

새로운 장소와 설비/기구 등에 대해 그 기능과 규칙을 설명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노인요양시설 대상자는 익숙한 지역사회 및 가족과 떨어져 새로운 물리적 환경과 생활습관을 만나게 되므로

떨어져 새로운 물리적 환경과 생활습관을 만나게 되므로

입소 초기의 단계는 시설의 새로운 규칙 등으로 부적응이 나타날 수 있어 이에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

노인요양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취미, 학습, 재활 등의 풍부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대상자의 자기표현의 기회로 삼도록 돕는다.

대상자의 불안, 외로움, 슬픔 등 감정을 경청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신뢰관계를 형성한다.

※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요양보호사의 자기 및 안전관리

요양현장에는 **직업성 감염(결핵, 간염 등)**, **안전사고(근골격계 질환 등)** 이용자나 가족의 **폭언, 폭력 등** 일하는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위험요인들이 있다.

직업성 감염 (결핵, 간염 등)

직업상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등 감염질환을 일으키는 미생물과 접촉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결핵, 간염, 독감, 신종플루** 등의 질환을 말한다. 호흡기나 상처 등을 통한 경로로 침투한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와 직접적인 접촉을 많이하기에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야 하며, **공단에서도 년 1회 건강검진을 받도록 권장**하고 있다.

예방법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또는 오염된 물질을 취급할 때는 **깨끗한 장갑을 착용**합니다.

서비스 전, 후에 손을 자주 씻습니다. /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자기 및 안전관리

직업성 근 골격계 질환

대상자들은 걷거나 목욕하거나 다른 일상적인 일들을 할 때 자주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자신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동작에서 장기요양보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많다.

대상자의 체위를 변경하는 동작들은 특히 허리에 손상을 주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근 골격계 질환**에는 **요통, 좌골신경통, 수근관 증후군** 등이 있다.

예방법

지속적으로 위험한 자세를 찾아내고 기술적인 방법, 행정적인 방법을 통해서 위험한 직무를 줄이는 것

근 골격계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는 가능한 대상자 또는 물체를 들어올리는 동작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보조장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대상자의 활동을 돕는 전동침대, 휠체어, 이동변기, 보행보조기 등을 사용한다.

요양보호사의 자기 및 안전관리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생리적, 정서적 반응으로, 사람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감당할 만한 적정수준의 스트레스는 생활에 활력을 주고 동기를 유발시킨다.

지나치게 높은 스트레스는 건강이나 삶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업무 상황에서 스트레스는 필연적이다. 의견차로 경험하는 갈등, 고용자로부터 받는 평가와 질책 등으로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일에 대한 의욕상실 자신감을 잃게 되고 삶의 보람도 상실된다.

예방법

긍정적으로 생각 일상생활이 자신의 감정에 좌우됨을 알고 좋은 감정을 갖고 일한다.

규칙적이고 적당하게 바쁜 생활과 균형 잡힌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한다.

숙면을 취한다. 수면은 스트레스에 민감해져 있는 몸과 마음을 쉬도록 한다.

적절한 운동과 웃음은 사람의 기분을 바꾸어주고 긴장을 풀어준다.

“

THANK

YOU

”

